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신설하고 경호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내용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9조)

현행 선박보안계획서는 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2부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그 중 1부를 다시 교부하고 있으나,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항만당국의 보관을 위한 1부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시기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시험 운영하고자 하는 때”로 함

다.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3조제3항)

항만시설의 임시운영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

· 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밀입국 및 위해물품 무단 반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여부 등,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함

라. 항만보안정보 동영상 촬영 및 유출 방지(안 제40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예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진촬영”을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으로 변경함

마. 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 허가절차 마련(안 제40조의2)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예에 따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마련함

바. 보안심사 대행기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분야 기술인력 보유기준 마련(안 제46조)

법 제37조제2항에서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함

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54조의2)

매년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적용기간을 보안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동량 등 실적확정, 승인신청 및 허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 받은 년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 경비 및 청구방식을 규정

아. 경비·검색인력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수리조선소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입구 등에 배치하는 경비·검

색인력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보안검색이 필요한 시설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하며, CIQ장에 추가로 배치하는 검색인력을 보안검색인력으로 명확히 함

자.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마련(안 별표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행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에 필요한 심사경력, 기본경력 및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신설함

차.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를 정함(별표 7의 제2호)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는 민원 편의와 심사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금액인 55,700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부”를 각각 “2부(1부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 내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항만 보안 인력·시설·장비를 시험 운영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제33조의 제목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을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최초·갱신·중간”을 “최초·갱신·중간·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

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치 여부”를 “비치 및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의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보안울타리·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 설치 여부

제34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4조제2항제4호 중 “선박보안심사 기관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을 “분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로 한다.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제35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2항”을 “영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진촬영허가”를 “촬영허가”로 한다.

제3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소지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및 항만 내 국제항해선박에 무기를 반입 또는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탑승하려는 사람은 출입 또는 탑승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 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 또는 탑승하기 전 그 사실을 미리 유선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 반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2. 외국인의 경우 무기 반입자의 여권번호
3. 출입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명칭 또는 국제항해여객선을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의 명칭 및 탑승일자
4. 무기반입 사유
5. 무기의 종류 및 수량(탄약 포함)
6. 그 밖에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 또는 소지 목적이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특정 업무에 해당하고 무기의 종류가 시행령 제11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입 또는 소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기 반입·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항해선박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제1항 중 “선박보안책임자또는”을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와”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선박보안심사”를 “보안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박보안심사 업무 대행기관은 별표 5의 선박보안심사관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 대행 기관은 별표 5의 항만시설보안심사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중 “별표 5”를 “선박보안심사 업무 대행기관은 별표 5”로, “자격기준”을 “자격기준 중 선박보안심사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고,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 대행기관은 별표 5의 보안심사관 자격기준 중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행기관으로”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년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④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 : 항만시설보안료 납입액의 100분의 3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 항만시설소유자와 항만

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이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항만시설보안심사 및”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으로 한다.

제56조제3호 중 “항만시설보안심사 및”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으로 한다.

별표 4의 경비·검색 인력의 세부 기준란 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는 제1호부터 제3호”로, “국제여객터미널에서”를 “터미널에서”로, “검색인력을”을 “보안검색인력을”로 한다.

2. 부두 외의 안벽으로 이루어진 수리조선소 등과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선박항만연계활동이 이루어지는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의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에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 1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별표 5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 표의 항만시설보안심사관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관 사이

에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기본수수료: 55,700원
------------	----------------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최초·갱신·중간보안심사”를 “최초·갱신·중간·임시보안심사”로 한다.

항만시설 ☐ 최초 ☐ 갱신 ☐ 중간 ☐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중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시행령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제45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선박보안심사관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심사경력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기 본 자 격	기 본 경 력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자 가. 해양수산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선박의 항해, 기관 또는 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국제항해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과 나목의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자 가. 항만시설보안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해양수산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항만시설보안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자
	교 육 경 력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모두 받은 자 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의 내용: 7시간 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이행과 승인요령: 7시간 다. 선박보안평가와 선박보안심사 요령: 7시간 라. 선박 및 항만 보안시설·설비의 운용·관리: 4시간 마. 선박보안 일반: 3시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가.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항만시설보안 실무 교육(20시간)을 이수한 자

비 고
1. 선박보안심사관은 3년 단위로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을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여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선박보안심사관은 교육경력란의 교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은 각 2시간 이상, 라목 및 마목의 교육은 각각 1시간 이상,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 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측시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교부 받으려는 (임시)항만시설적합 확인서	확인서 번호			
	확인서 발행일자			
	유효기간			
재교부 사유	(필요시 사유서 별첨 가능)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시)항만 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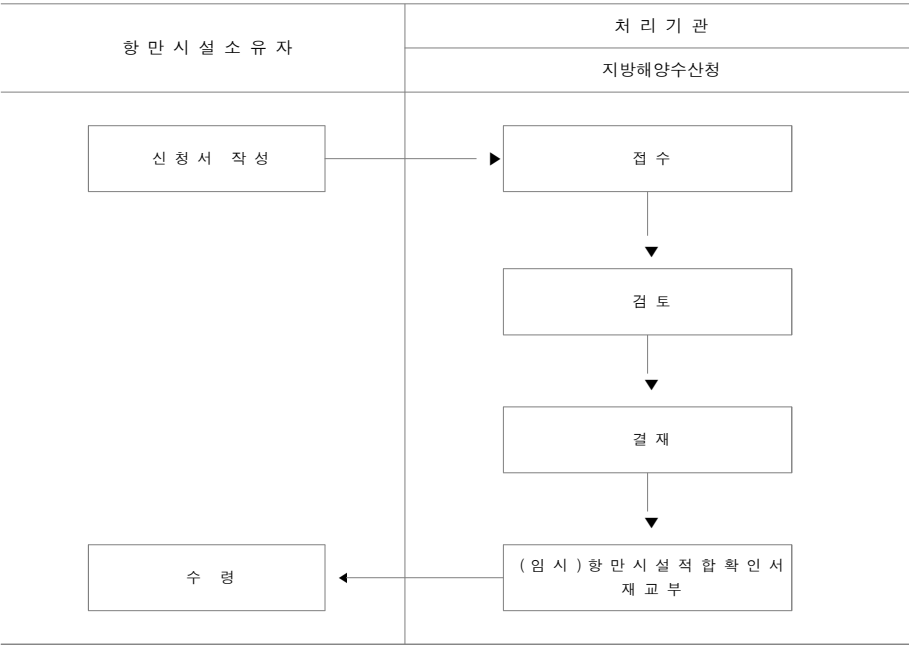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서 번호
Statement No.: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INTERIM STATEMENT OF COMPLIANCE OF A PORT FACILITY

항만시설 이름(Name of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 주소(Address of the Port Facility):

이 임시적합확인서는 위 항만시설이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XI-2 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승인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선박의 이용을 위하여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승인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liance of this port facilit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nd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has been verified and that this port facility temporarily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Port Facility Security Plan. This plan has been approved for the following:

- ☐ 여객선(Passenger ship)
- ☐ 고속여객선(Passenger high speed craft)
- ☐ 고속화물선(Cargo high speed craft)
- ☐ 산적화물선(Bulk carrier)
- ☐ 유조선(Oil tanker)
- ☐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 ☐ 가스운반선(Gas carrier)
- ☐ 이동식 해상 구조물(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 ☐ 그 밖의 화물선(Cargo ship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above)

이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_____까지 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청장 서명(Signatur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① -----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 2부(1부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2. -----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가.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생략)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1. ~ 3. (생략)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 내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항만보안 인력·시설·장비를 시험 운영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 최초·갱신·중간·임시 -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 ----- -----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3. (생략) <신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방법·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1. ----- --- 비치 및 이행 여부 2.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의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보안울타리·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 설치 여부 ④ ----- 법 제26조제3항----- ----- ----- ----- ----- -----
--	--	--	---	--

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3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

----- . -----

----- .

⑤ ----- 제4항

----- 제32조제3항 -----

----- .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

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선박보안심사 기관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해양수산청장 -----
③ -----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

----- .

1. -----
가. 분실 -----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
가. -----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

나. (생 략)	선---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 --- 영 제10조제3항-----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금지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금지 예외)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초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을 시험운영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생 략)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②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u>사진촬영허가</u>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촬영허가-----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소지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및 항만 내 국제항해선박에 무기를 반입 또는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탑승하려는 사람은 출입 또는 탑승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 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 또는 탑승하기 전 그 사실을 미리 유선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 반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2. 외국인의 경우 무기 반입자

의 여권번호

3. 출입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명칭 또는 국제항해여객선을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의 명칭 및 탑승일자

4. 무기반입 사유

5. 무기의 종류 및 수량(탄약 포함)

6. 그 밖에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 또는 소지 목적이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특정 업무에 해당하고 무기의 종류가 시행령 제11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입 또는 소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기 반입·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항해선박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생략)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5의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
-----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와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

1. 보안심사 -----
2. 선박보안심사 업무 대행기관은 별표 5의 선박보안심사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 대행기관은 별표 5의 항만시설보안심사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3. ~ 5. (생 략)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생 략)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

3. ~ 5. (현행과 같음)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 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

----- 법 제42조제3항-----

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42조제4항-----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④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 : 항만시설보안료 납입액의 100분의 3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 항만시설소유자와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이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	제55조(수수료) ----- ----- ----- ----- ----- -----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 -----

료를 내야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생 략) 3. 제3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 2017년 1월 1일 4. ~ 8. (생 략)	-----. 제5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 ----- 4. ~ 8. (현행과 같음)
--	--